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-14호

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64-1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326호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21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가. 대상지

구역명	위치	권리산정기준일	면적	사업 유형	신청 유형
(가칭) 문현7 구역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264-1번지 일원	2025.7.17.	53,530㎡	재개발사업	사전타당성

나. 지정사유

-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내 무분별한 토지분할,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, 공동주택건축 등 투기를 억제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

다.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

-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름

라.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‘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(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326호)’에 따름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,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- 「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따라 사전타당성 심의 결과 통보 일로부터 3년내에 정비구역 지정 미신청시,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는 취소되며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

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(☎051-888-4234) 또는 남구 건축과((☎051-607-461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고시는 향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한 사항으로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□ 구역 지적도

